

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999년 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■ 제안사유

-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고,
- 행정자치부 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코자 함.

■ 주요내용

- 재해대책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함.(제3조)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 (제4조)
- 기금 운용·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조문 신설(제7조 내지 제9조)
-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.(제10조)

■ 참고사항

- 행정자치부 개정표준안 : 광주광역시 재대본 13930 - 65 ('98. 5. 11)
- 지방자치법 : 제15조
- 지방재정법 : 제29조, 제64조

■ 검토의견

-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3월 18일 조례 제427호로 제정 운영중에 있는 광주광역시

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 조례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 7월 구 내무부에서 시달한 『지방자치단체기금 출납지침』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법령 검토미흡 등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례들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
- 본 조례안중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,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 위반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하였으며,
 - 조례안 제4조, 기금의 용도 조항에서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“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”라는 단순 조항에서 7개의 각호를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,
 - 조례안 제5조, 기금의 회계관리 조문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위반된 사항으로 기금의 수입,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토록 하였음은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.
 - 조례안 제7조,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및 제8조,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제9조, 위원회의 운영은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신설하였고,
 - 제10조는 구청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,
 - 이 조례 개정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거나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아 보다 알차고 체계적인 조례가 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■ 참고자료

-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안 요약